2026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

□ 보수교육(3시간)은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을 말합니다.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영업자*는 **'매년 보수교육(3시간)'**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, 정기위생교육 **미이수시 과태료 (1차 30만원)**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* 교육대상: **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, 인터넷구매대행업, 신고대행업, 보관업** 영업자

□ 교육기관 및 일정 안내

구분	교육기관명	교육 형태	연락처 및 누리집
위생교육	한국식품안전협회	온라인	(누리집) safetyfood.or.kr ☎ 02-2051-7006
	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		(누리집) edu.khff.or.kr ☎ 1661-2371
	한국식품산업협회		(누리집) www.kfia21.or.kr ☎ 1577-3869
참고사항	* **대표자**가 해당연도에 위생교육 이수 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* **위생관리책임자**가 위생교육 이수할 시 **'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만'** 인정 * '26년에 영업등록된 신규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위생교육 이수 * **'26년 위생교육 이수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**		

※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영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, **'사업자 폐업**과 **별도'**로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**폐업 신고**를 하여야 합니다.

☞ 관할 지방식약청에 폐업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및 해당 영업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폐업 신고 방법
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 접속 → 통합민원창구 → 기업회원가입 또는 기업회원로그인 → (검색) 민원사무명: 수입식품등 ○○○○○ 영업의 폐업신고

2026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

□ 보수교육(3시간)은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을 말합니다. 위생용품수입업자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라 **'매년 보수교육(3시간)'**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, 정기위생교육 **미이수시 과태료 (1차 30만원)**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위생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※

□ 교육기관 및 교육 일정 안내

구분	교육기관명	교육 형태	연락처 및 누리집
위생교육	한국식품정보원	집합 & 온라인교육	(누리집) foodi.com/ ☎ 042-820-9000
	세스코 아카데미		(누리집) www.cescoacademy.co.kr ☎ 02-2140-0288
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	(누리집) edu.ktr.or.kr/ ☎ 1577-0091 (교육안내 4번)
참고사항	* **대표자**가 해당연도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* **위생관리책임자**가 위생교육 이수할 시 **'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만'** 교육 수료 인정 * '26년에 영업 등록된 신규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보수교육 이수 * **'26년 위생교육 이수 기한:** 2026년 12월 31일까지		

※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영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, **'사업자 폐업**과 **별도'**로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**폐업 신고**를 하여야 합니다.

☞ 관할 지방식약청에 폐업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및 해당 영업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폐업 신고 방법
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 접속 → 통합민원창구 → 기업회원가입 또는 기업회원로그인 → (검색) 민원사무명: 위생용품수입업 영업폐업(재개업・휴업)신고